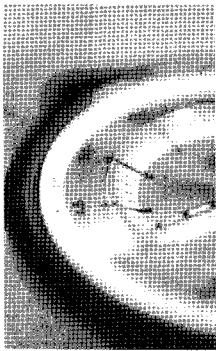




특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업계 검토의견 안내

국회에서는 지난 2011.3.11(금) 본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신기술·특허를 침해했을 때 실제 발생한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발표(2011.4.8) 하였으며,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2011.4.28(목)까지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2011.4.13(수) 골판지포장조합은 하도급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안)을 제출하였다.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내용 안내

1. 주요 추진경과

- '10. 8.20, 하도급거래 제도개선 과제(6건) 공정위 제출
 -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개선과제(4건)
 - 납품단가 연동제(원자재가격 연동제)도입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대상 제한적 전속고발권 폐지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개선과제(2건)
 - 범정부 차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신뢰성 갖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공표 방안 강구

- '10.10.14,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
 -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기술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10.10.29, 하도급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허태열 의원 대표발의(9.29정부대책 반영),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 '10.11. 3, 하도급거래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주최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원회

- '11. 2.17, 하도급법 개정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상근부회장 참석)

- '11. 3. 8, 공정위,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에 대한 공정위의 전향적 검토 촉구
 - :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 기술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강력 주장
 - : 박선숙 의원, 홍준표 의원

- '11. 3.10,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 조속한 하도급법 개정 촉구 (본회 정책개발본부장)

○ '11. 3.11,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개정 주요 내용

가.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조정 신청권 부여 (제16조의 2 ②)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가능

- 신청권 부여 대상 협동조합 : 전국조합,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

⇒ 직접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제외

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도입(제12조의 3 ④ 및 ⑤)

○ 기술자료 요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발생한 손해 배상

○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를 배상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 기술자료의 탈취·유용행위 입증책임 원사업자에게 부여, 법원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추정에 의한 인정으로 산정 가능

다. 하도급대금 감액 입증책임 전환(제11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토록 규정

○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원사업자의 행위 규정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업계 검토의견 안내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대금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등 사전 서면통지 의무 원사업자에게 부과

라.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화(제12조의 3① 및 ②)

- 현재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를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로 개정
- 원사업자가 예외적(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의무,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을 명시한 서면 발급 의무화

마.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제2조 ②)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를 초과하기만 하면 하도급법 적용
⇒ 개정이전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이상일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바. 납품단가 조정 Fast Track 제도 도입(제16조의 2 ⑤)

- 수급사업자나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에 따라 납품단가에 대한 협의가 개시되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
⇒ 개정이전 :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가능

3.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1-1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 취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등의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75호, 2011. 3.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조정신청의 요건·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 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라.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하도급총괄과장, 전화 (02)2023-4491, 팩스 (02)2023-450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업계 검토의견 안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감액시 서면기재 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말한다.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 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을 말한다.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① 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3항에서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일을 의미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2.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3항에 “요건”이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2에서의 조함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2.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여부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3.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 목록
4. 하도급계약서(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9조의3(예외적인 분쟁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업계 검토의견 안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협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감액시 서면기재 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 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을 말한다.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① 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3항에서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의미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2.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신 설〉	②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3항에 "요건"이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6조의2에서의 조합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2.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여부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3.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 목록 4. 하도급계약서(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자료제9조의3(예외적인 분쟁조정신청 사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업계 검토의견 안내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신 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골판지포장조합 검토 의견

하도급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안)

관련조문	개정(안)	조합수정(안)	검토 의견
제9조의2 ① 법 제16조의2	1.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의미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 상승한 경우	1.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의미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 상승한 경우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4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의미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2이상 상승한 경우 3.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의미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8이상 상승한 경우	1.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원재료의 비중(10%, 40%, 60%이상)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골판지원가 구조상 원재료 점유비가 60%이상 수준임을 감안할 때 원재료가격 15% 인상시점에서는 매출액 기준 9%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는 골판지포장업계 평균 영업이익율 4.8%인 점을 감안하면 원재료 점유비 60% 수준에서는 원재료의 가격이 8%상승한 시점에서 반영되어야 함. ※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표준산업분류:1721)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원재료비의 비중 SW(Single Wall) 65%, DW(Double Wall) 76%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